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시행세칙

2011년 9월 1일 제정
2012년 3월 1일 개정
2012년 9월 1일 개정
2013년 11월 6일 개정
2013년 12월 23일 개정
2017년 3월 1일 전부개정
2019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0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1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2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2년 10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6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2조(부원장의 사무분장) ① 교무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원의 인사와 복지에 관한 사항
2. 신입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원의 각 교과과정의 운영과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양특강과 강의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종합시험의 시행과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원의 각 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학생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지원센터의 운영과 학생지도(진로지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3. 학생취업의 지원
4. 국내·외 인턴과정과 공익봉사교과의 운영
5.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의 준비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생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법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 기획대외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홍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원과 연구센터의 연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교내·외 평가에 관한 사항
7. 발전기금의 모금에 관한 사항
8. 교우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확대보직교수회의)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보직교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확대보직교수회의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함)
2. 대학원 부원장
3. 법과대학 부학장 겸 일반대학원 주임교수
4. 법무대학원 부원장
5. 법학연구원장
6. <삭제 2022.3.1.>
7. 교과주임
8. 변호사시험주임교수
9. 공익법률센터소장
10. 자유전공학부장
11. 그 밖에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직교원

③ 확대보직교수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학사운영위원회) ① 학사행정과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과주임, 전공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3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전공주임교수) ① 다음 각 전공을 대표하는 교수를 전공주임교수로 한다.

1. 헌법
2. 민법
3. 형사법 및 기초법
4. 행정법
5. 상법
6. 민사소송법
7. 국제법
8. 노동법
9. 지적재산권법

② 전공주임교수는 각 전공교수회의에서 선임한다. 대학원장은 선임될 주임교수에 관한 의견을 해당 전공교수회의에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진로지도주임교수) ①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재판연구원준비반, 검찰준비반 등 진로지도주임교수를 둔다.

② 진로지도주임교수는 학생부원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진로를 지도한다.

제3장 입 학

제7조(신입생 선발기준의 확정) 대학원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말까지 다음해 입학전형시행기준을 확정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의무) ① 전임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입생 선발절차에 입시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원은 입시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입생오리엔테이션) ① 신입생의 학교생활을 안내하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②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원 주관으로 하루 동안 교내에서 학교안내, 학업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회가 주관하여 학교생활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학원은 학생회 주관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이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지원해야 한다.

제10조(신입생을 위한 예비강좌) 대학원은 등록을 마친 신입생을 대상으로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과목에 관한 예비강좌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식) ① 입학식은 매년 2월 28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식은 학생부원장이 진행하며 원장의 인사, 교우회장 또는 내·외 인사의 축사, 교무부원장의 학교소개로 구성한다.

제12조(입학설명회) 대학원은 교내·외 입학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3조(교육과정일람) 교육과정일람은 [별지 1 교과이수체계도]를 따른다.

제14조(교과목 신설·변경·폐지 절차) ① 교과목의 신설·변경·폐지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제15조(교수요목)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교과목 이수 등) ① 학생은 교과과정이수체계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1학년 학생은 1학년 필수과목을 1학년 해당 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실습과정은 2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실습 교과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2.3.1.>

④ 공익법률상담은 학기 중 또는 방학중에 이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⑤ 학생의 학년 구분은 1~2학기 등록자는 1학년, 3~4학기 등록자는 2학년, 5~6학기 등록자는 3학년으로 본다.

제17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는 여름 계절학기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의 수강신청은 기말시험 이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③ 계절학기의 수업료는 학부에 준한다.

④ 계절학기에는 대학원의 국제법무(GLP) 특성화를 위하여 Law & Globalization 교과목을 개설하며 미국법을 중심으로 미국 로스쿨의 저명교수 또는 법조인을 초빙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절학기 교과목 담당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빙교수(Invited Professor)로 임용하며, 외국인우수초빙교수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특성화과정 및 전문인증과정의 운영) ① 대학원은 국제법무(GLP)를 특성화로 하며, 국제비즈니스

스 특성화과정, 국제통상 특성화과정을 둔다. 특성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대학원은 공익·인권 전문과정 등의 전문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의 신설 및 폐지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문과정의 신청은 2학년 1학기 초에 하며, 3학년 1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변경 또는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과정은 2개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대학원장은 이수증서를 수여하며, 전문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인증과정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교수법의 개발 등) ① 대학원은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강의를 위하여 교수법을 개발·개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수법의 개발·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③ 교수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강의평가 지침」, 「안암강의상 등 수상자 선정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학사관리

제20조(강의개설의 절차) ① 행정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학기 중간시험 직후 전임 교원 전원에 게 다음 학기 강의개설에 관한 안내를 하고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강의개설계획을 요청한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제1항의 기간 안에 강의개설계획을 취합하여 행정실에 제출한다. 전공주임교수가 없는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과목 주관교수가 강의개설계획을 제출한다.

③ 교무부원장은 강의개설에 관한 안내일 종료 후 3주 이내에 학년별 시간표를 작성한다.

④ 교무부원장은 전공별 협의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1조(시간표의 작성) ① 강의시간은 주중, 주간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과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분반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1학년 필수과목은 각 과목이 요일별 시간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며, 동일과목의 분반은 동일시간대에 편성되도록 한다.

④ 2·3학년 기본과목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편성하며, 동일과목의 분반은 동일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실무필수과목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조윤리(1학년 1학기): 4분반
2. 법률정보조사(1학년 1학기): 4분반
3. 법문서작성(2학년 1학기): 7분반(월요일 오후)
4. 모의재판(2학년 2학기): 4분반(월요일 오후 또는 금요일 오후)
5. 민사기록연습 I(2학년 2학기): 6분반(월요일 오후)

⑥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I, 검찰실무Ⅱ는 기본과목에 준하여 편성한다.

제22조(수강인원) ① 과목별 수강인원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분반과목: 입학정원에 30%를 추가한 수를 분반 수로 나눈 인원
2. 외국어강의과목: 20명 이하

② 담당교수는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강인원의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

제23조(강의적합성의 충족) ①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의적합성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1. 이론과목: 강의개설 전 5년 이내의 300%의 논문·저서 실적, 또는 200%의 논문·저서 실적과 관련과목 강의 1강좌의 경력. 이 경우 논문·저서의 종류 및 비율계산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실무과목: 5년 이상의 관련분야 실무경력. 다만, 전임교원은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3. 외국어강의과목: 200%의 해당 외국어 논문·저서 실적 또는 외국어강의과목 1학기 이상의 강의경력 등 “법학전문대

학원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경력

② 대학원은 강사로 추천된 교원에게 연구실적 등 제1항의 강의적합성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1.>

③ 강사는 제1항의 요건 외에도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3.1.>

제2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 강의적합성, 그 밖에 강의를 담당하기 위한 형식적·실질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심의한다.

제25조(수강신청의 시기, 방법) ① 대학원은 매학기 개강 1월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강신청을 실시한다.

② 신입생의 1학년 필수과목은 먼저 학생의 선호에 따라 분반을 정하도록 하고,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 인원이 적은 분반에 분반순서에 따라 학번 순으로 다른 분반의 수강인원과 균등하게 순차 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수강신청의 학점 제한) 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5학기 미만 등록자가 12학점 미만 또는 상한초과 수강신청인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가 있어야 한다.

② 상한초과 또는 미달 수강신청의 승인 여부는 교무부원장의 심의를 거친다.

제27조(수강신청의 정정) ① 대학원은 매학기 개강 첫째 주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강신청 정정을 실시한다.

② 수강신청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교의 수강신청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제28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수강신청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생은 학년별 수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수강신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어 개강 넷째 주에 수강신청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 후 학점이 6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강신청의 철회신청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수강신청 철회의 승인 여부는 교무부원장의 심의를 거친다.

제29조(학점인정시험) ①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학점인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매학기 개강 1월 이전에 법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실시에 관하여 안내하고, 수강신청정정 기간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② 학점인정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1학기 개강 이전: 헌법Ⅰ, 민법Ⅰ, 민법Ⅱ, 형법Ⅰ

2. 2학기 개강 이전: 헌법Ⅱ, 민법Ⅲ, 민법Ⅳ, 형법Ⅱ

③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시험을 신청한다.

제30조(시험) ① 중간시험은 개강 8주차, 기말시험은 15주차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 담당 교수는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학생의 실무수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일시를 정하여야 한다.

② 재시험은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등 성적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1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일정을 공고한 후 시행한다.

제31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① 학생부원장은 시험부정행위(시험을 갈음하는 과제물의 표절행위를 포함한다)를 범한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요청으로 해당 사건을 학생상벌위원회에 부친다.

②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생부원장, 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원 전임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학생부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학생 징계의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수강 학점의 제한과 취득학점) ① 반복하여 재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재수강 제한 학점에 포함된다.

② F학점을 받아 동일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재수강으로 보며, 운영 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재수강 제한 학점에 포함된다.

③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최종성적으로 한다.

제33조(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① 대학원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튜터링 프로그램의 대상과목은 원칙적으로 수강인원 30명 이상인 과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3. 06. 01>

1. 변호사시험 필수과목

2. 답안 첨삭지도, 기록형 학습, 사례형 풀이 방법론, 과제 수행방법 지도 등이 필요한 과목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 담당교수가 1차 수강신청 완료 후 튜터링을 요청하면 튜터를 배정하며, 튜터링 요청 교과목이 튜터링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강인원 수를 기준으로 튜터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06. 01>

④ 삭제 <2023.06.01>

제34조(튜터의 자격, 선발) ① 튜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개강 초 담당교수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배정한다. <개정 2023. 06. 01>

1. 대학원 재학생 중 전 학년 평균 평점이 B+ 이상이고 담당할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대학원 휴학생, 졸업생 중 학업성적이 튜터의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학생

3. 일반대학원생 중 1, 2호에 준하는 학생

② 튜터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③ 튜터에게는 대학원장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지도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06. 01>

제35조(튜터링 학습반의 운영) ① 튜터링 학습반은 각 교과목 단위로 하되, 튜터 1인당 수강인원 3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06. 01>

② 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은 매학기 개강시부터 종강시까지로 한다.

③ 튜터는 매 학기 중간시험 직후, 기말시험 직후에 각 사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튜터는 매학기 종료 후 소정의 기간 안에 행정실에 해당 튜터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다.

제36조(변호사시험 지원프로그램) ① 대학원은 변호사시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변호사시험 지원프로그램의 전임교수별 강의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졸업요구학점과 교과목) ① 졸업에 필요한 필수이수학점 및 교과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3.1.>

②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학생이 이수할 수는 있으나 졸업학점으로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신설 2022.3.1.>

제38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3회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 교과목은 변호사시험 기본과목으로 하며 문제유형은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한다.

③ 학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3회의 종합시험에 모두 응시하고 문제해설특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종합시험의 합격 여부는 과목별로 결정하며, 각 과목별 합격 기준은 3회의 종합시험에서 1회 이상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회와 제2회 종합시험에 의하여 제4항에서 정한 과목별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해 추가시험 등 특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졸업사정을 위한 종합시험의 최종 합격 여부는 각 과목별 성적뿐만 아니라 응시 여부, 해설 특강의 참여 여부, 특별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⑦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종합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최우등졸업자 등의 선정) 대학원은 졸업사정의 결과를 기초로 최우등졸업자와 우등졸업자를 정한다.

제40조(졸업식) ① 졸업식은 매년 2월 25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졸업식에서는 학위증서와 전문인증서를 수여하며,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에 대한 표창을 한다.

③ 졸업식은 학생부원장이 진행하며 원장의 인사, 교우회장의 축사,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 졸업증서의 수여, 수석졸업생의 인사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시행지침」은 이 세칙에 통합한 후 폐지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인원 제한지침」은 이 세칙 제22조에 통합한 후 폐지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 시행지침」은 이 세칙 제38조에 통합한 후 폐지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위원회에 관한 내규」는 각 위원회 관련 규정에 통합한 후 폐지한다.

⑤ 제2조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제21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별지1], [별지1-1] 개정, [별지2] 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8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3조, 제34조 개정)

부 칙 (2022.3.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6조, 제23조, 제37조, [별표1], [별표2] 개정)

부칙 (2022. 10. 1.)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6. 1.)

이 개정세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3조, 제34조, 제35조 개정)

[별표1] <개정 2022.3.1., 2022.10.1.>

법학전문대학원 교과이수체계도

* **고딕체**는 기본과목의 전공필수, 전공실무필수

전공		학년	1학년(학수번호/학점/시간)		2학년(학수번호/학점/시간)		3학년(학수번호/학점/시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공통		학생지도I~X (KLS0101~0110) (각 1/0, 6학점 공통필수)						
		비아유리스 (KLS1913/1/1)	공익법률상담I(KLS1016), II(KLS1017), III(KLS1019) (각 1/0) 아시아비즈니스법저널I(KLS1011), II(KLS1012) (각 1/0) 고려대학교법저널I(KLS1013),II(KLS1014) (각 1/0)					
기초법학			법철학 (KLS1102/3/3)	법학방법론 (KLS2103/3/3) 사법제도의 비교와역사 (KLS1137/3/3)	로마법 (KLS1135/3/3) 법사상사 (KLS1117/3/3)			
헌법	기본	헌법 I (KLS1205/3/3)	헌법 II (KLS1204/3/3)					
	심화			헌법원리론 (KLS2609/3/3)	헌법소송법 (KLS2422/3/3)	헌법과정치 (KLS3701/3/3)		
	연습			헌법연습 (KLS2411/3/3)				
행정법	기본			행정법 I (KLS2205/3/3)	행정법 II (KLS2312/3/3)			
	전문			세법 I (KLS2501/3/3)	세법 II (KLS2502/3/3) 환경법 (KLS2318/3/3)			
	심화				행정쟁송법 (KLS2416/3/3)	지방자치법 (KLS3703/3/3) 토지공법 (KLS3705/3/3)		
	연습					행정법연습 (KLS3305/3/3)		
형사법	기본	형법 I (KLS1207/3/3)	형법 II (KLS1206/3/3)	형사소송법 (KLS2201/3/3)				
	심화			경영과형법 (KLS2335/3/3)	형사정책 (KLS2374/3/3) 예술평형법 (KLS2426/3/3)	형사증거법 (KLS3907/3/3) 특별형법론 (KLS3339/3/3) 형사법종합실무 (KLS3909/3/3) 형사판례연구 (KLS3599/3/3)		
	연습			형법연습 (KLS2413/3/3)	형사소송법연습 (KLS2408/3/3)			
민법	기본	민법 I (KLS1201/3/3) 민법 II (KLS1203/3/3)	민법 III (KLS1202/3/3) 민법 IV (KLS1210/3/3)		가족법 (KLS2202/3/3)			
	심화	한국계약법 I (KLS1309/3/3)	한국계약법 II (KLS1310/3/3)	채권담보법 (KLS2601/3/3)	매매법 (KLS2608/3/3)			
	연습				민법연습 (KLS2324/3/3)	가족법연습 (KLS3303/2/2)		

전공		1학년(학수번호/학점/시간)		2학년(학수번호/학점/시간)		3학년(학수번호/학점/시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민사 소송 법	기본		민사소송법(상) (KLS1208/3/3)	민사소송법(하) (KLS2305/3/3)			
	심화					고급민사소송법 (KLS3527/3/3) 회생·파산법 (KLS3529/3/3)	분쟁해결론 (KLS3338/3/3) 민사집행법 (KLS3342/3/3)
	연습				민사소송법연습 (KLS2406/3/3)		
상사 법	기본			상법총칙·상행 위법 (KLS2307/3/3) 회사법 (KLS2207/3/3)	어음·수표법 (KLS2386/3/3) 보험법 (KLS2344/3/3)	해상법 (KLS3535/3/3)	
	전문		금융법 (KLS1312/3/3)	국제거래법 (KLS2301/3/3) 공정거래법 (KLS2311/3/3)	소비자법 (KLS2310/3/3)		
	심화			법경제학 (KLS1103/3/3) 자본시장법 (KLS2323/3/3)	유통법 (KLS2394/3/3) 국제회사법 (KLS2436/3/3) 국제사법 (KLS2354/3/3) 미국계약법 (KLS2412/3/3)	해상보험법 (KLS3531/3/3) 신탁법 (KLS3313/3/3) 국제계약법 (KLS3333/3/3) 국제상사중재법 (KLS3539/3/3)	국제해상운송법 (KLS3334/3/3) 은행법 (KLS3332/3/3) 선박충돌법 (KLS3532/3/3)
	연습					경제법연습 (KLS2353/3/3)	상법연습 (KLS3324/3/3)
지적 재산 권법	전문			지적재산권법 개론 (KLS2419/3/3)			
	심화			저작권법 (KLS2309/3/3)	특허법 (KLS2314/3/3) 인터넷법 (KLS2376/3/3)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법 (KLS2382/3/3)	IT법 (KLS3577/3/3)	
노동 법	기본		노동법 (KLS1216/3/3)				
	전문			HRM과노동법 (KLS2317/3/3)		사회보장법 (KLS3521/3/3)	
	심화						노동법연습 (KLS3352/3/3)
국제 법	전문			국제법 (KLS2203/3/3)	국제통상법 (KLS2308/3/3)		
	심화			국제분쟁해결제 도 (KLS2313/3/3)	대한민국의 대외공법 (KLS2322/3/3) 자유무역협정론 (KLS2418/3/3) 국제통상관련 지적재산권법 (KLS2336/3/3)	국제투자법 (KLS3509/3/3) 반덤핑법 (KLS3511/3/3) 국제무역과환경 (KLS3517/3/3) 국제기구법 (KLS3555/3/3) 동북아시아와 국제법 (KLS3587/3/3)	국제인권법 (KLS3312/3/3)
	연습						국제법연습 (KLS3706/3/3)

전공		학년	1학년(학수번호/학점/시간)		2학년(학수번호/학점/시간)		3학년(학수번호/학점/시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융합법	심화		미국법입문 (KLS1308/3/3)	개인정보보호법 (KLS2315/3/3) 공익인권법 (KLS2333/3/3) 미국헌법 (KLS2363/3/3)	협상이론과기법 (KLS2434/3/3) 엔터테인먼트법 (KLS2364/3/3)	유럽연합법 (KLS3327/3/3) 방송통신법 (KLS3707/3/3) 차별금지법 (KLS3547/2/2)	중국법입문 (KLS3812/3/3)	
	연습					민사법종합연습 (KLS3307/3/3)	공법종합연습 (KLS3304/3/3)	
실무기초		법조윤리 (KLS1935/1/1) 법률정보조사 (KLS1901/1/1)		법문서작성 (KLS2901/1/2) 형사법무연습 (KLS3945/1/3)	모의재판 (KLS2904/1/1) 민사법무연습 (KLS3943/1/3)			
				실습과정 I, II (KLS1990, 1991/1/1 계절)				
실무전문	공법					공법기록연습 (KLS3919/3/3)		
	형사법			경찰실무 (KLS2903/3/3)	검찰실무I (KLS2908/3/3) 형사재판실무 (KLS2920/3/4)	검찰실무 II (KLS3911/3/3)	형사기록연습 (KLS3908/3/3)	
	민사법			요건사실론 (KLS2907/2/2)	민사기록연습 I (KLS2918/1/3)	민사재판실무 (KLS3913/3/4) 고급민사소송실무 (KLS3601/3/3)	민사기록연습 II (KLS3918/3/3)	
		미국재판실무(여름계절) (KLS1937/1/1)						
	상사법				금융거래법실무 (KLS2902/3/3)	M&A의 이론과실무 (KLS3901/3/3)	회사소송의 이론과실무 (KLS3922/3/3) 국제중재실무 (KLS3928/3/3) 상사계약실무 (KLS3902/3/3) 국제영문계약실무 (KLS3904/3/3)	
	노동법				노동소송실무 (KLS2926/3/3)			
	융합법			법과재판실무I (KLS2923/1/1) 변호사실무 (KLS2925/1/2)	법과재판실무 II (KLS2924/1/1)	조정실무 (KLS3921/3/3)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I (KLS3935/1/1)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 II (KLS3936/1/1)	
		실습과정 III, IV (KLS1992, 1993/1/1 계절) 임상법무실습 I, II, III, IV (KLS2914, 3915, 3914, 3917/1/2)						

[별표2] <개정 2022.3.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요구학점과 이수교과목표

* 고딕체는 변경된 교과목

학번	졸업요구 학점	이수교과목 목록
2009	32학점	헌법 I, 헌법Ⅱ, 민법 I, 민법Ⅱ, 민법Ⅲ, 형법 I, 형법Ⅱ, 민사소송법 I, 민사소송법Ⅱ , 법률정보조사,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실습과정, 모의재판, 민사기록연습 I
2010	30학점	헌법 I, 헌법Ⅱ, 민법 I, 민법Ⅱ, 민법Ⅲ, 형법 I, 형법Ⅱ, 민사소송법(상), 법률정보조사,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실습과정, 모의재판
2011- 2012	31학점	헌법 I, 헌법Ⅱ, 민법 I, 민법Ⅱ, 민법Ⅲ, 형법 I, 형법Ⅱ, 민사소송법(상), 법률정보조사,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실습과정, 모의재판, 민사기록연습 I
2013- 2016	32학점	헌법 I, 헌법Ⅱ, 민법 I, 민법Ⅱ, 민법Ⅲ, 형법 I, 형법Ⅱ, 민사소송법(상), 법률정보조사,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실습과정, 모의재판, 민사기록연습 I, 비아유리스
2017부터	35학점	헌법 I, 헌법Ⅱ, 민법 I, 민법Ⅱ, 민법Ⅲ, 형법 I, 형법Ⅱ, 민사소송법(상), 민법연습 , 법률정보조사,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실습과정, 모의재판, 민사기록연습 I, 비아유리스